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청도군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

2017. 12.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 재가설 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 도 군
관 계 부 서 ∩ ∩ ∩ ∩ 과
내 용

청도군 ∩ ∩ ∩ ∩ 과에서는 “ ∫ ∫ ∫ 재가설 공사”를 아래 [표] 와 같이 2016. 12. 29.
‘(주)√√√√√ △△△’과 계약하고, 2019. 1. 3.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 ∫ 재가설 공사	00	00	교량L=190m 도로L=310m	0,000	2016. 12.29.	2017. 1. 4. ~ 2019. 1. 3.	₩0000 000	진도 50%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세굴방지블럭 관련

∫ ∫ ∫ (L=190m, B=9m) 교각 기초를 보호하기 위한 세굴방지블럭 수량을

산출하면서 실시설계보고서(Page 4-52) ‘교각에 대한 세굴심도 산정 및 세굴반경 계산’에 의하면 세굴반경 16.88m를 적용하여 세굴방지블럭 수량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세굴반경 21m를 적용하여 수량을 산출함에 따라 세굴 방지블럭(1000×1000×500, 640개)의 수량이 과다하게 반영되어 공사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게 하였다.

2. 부지임대료 관련

당초 설계상 가설사무실 및 교량 거더 제작장 설치를 위해 부지임대료를 반영 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가설사무실(컨테이너 2동)은 보상협의를 완료된 부지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량 거더 제작장은 인근 학교(00리 학교용지 2,500 m²) 운동장 부지를 당초 설계 반영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감액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천(≡≡≡≡) ΣΣΣΣΣΣ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 도 군
관 계 부 서 〇〇〇〇과
내 용

청도군 〇〇〇〇과에서는 “▽▽천(≡≡≡≡) ΣΣΣΣΣΣ 개선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2016. 4. 27. ‘* * * * *(주) * * *’과 계약하고, 2019. 5. 1.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천(≡≡≡≡) ΣΣΣΣΣΣ 개선사업	00	00	제방≒1.76km 교량1개소	0,000	2016. 4. 27.	2016. 5. 2. ~ 2019. 5. 1.	0000(주) 000	진도 36%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체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사토처리 관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189,108m³)는 운반거리 L=10km로 설계에 반영되어 사토를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처리한 사토의 일부(32,144m³)는 인근

현장 및 개인농지에 수요자가 운반비를 부담하여 사토를 유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공사에서는 사토적재 비용만 반영하여 당초 반영된 사토처리비를 감액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감액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2. 제방법면 감나무 식재 관련

매년 수해가 반복되는 ΣΣΣΣΣΣ에 대해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 점검결과 제방법면 감나무 식재는 부적정하여 불필요한 수목식재 사업비를 감액조치 하도록 공문(경상북도 00과-0000호)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본 공사 설계내역서에 하천정비사업 목적에 부적정하게 제방법면에 감나무 125주를 식재하도록 반영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정비사업』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 도 군
관 계 부 서 〇〇〇〇과
내 용

청도군 〇〇〇〇과에서는 “▽▽▽▽▽▽▽▽▽▽정비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2016. 6. 30. ‘(주)≡≡≡≡ ≡≡≡’과 계약 하고 2016. 7. 5. 착공하여 2018. 2. 24.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정비사업	00	00	저수지보강 1식	0,000	2016. 6.30.	2016. 7. 5. ~ 2018. 2. 24.	(주)≡≡≡≡ ≡≡≡	진도 95%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1조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도군 〇〇〇〇과에서는 ▽▽▽▽▽▽▽▽▽▽정비사업 총괄3회(1차분 3회, 2차분 2회)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후정산 항목인 보험료 등의 서류를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았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미납부

하고 있어 보험료 00,000천원을 정산조치 하여야 함에도, 추후 설계 변경 요인 발생시 활용을 목적으로 총괄보험료는 증감없이 준공기한이 임박한 1차분 보험료를 2차분에 이월하여 설계 변경하였다.

그 결과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미납부한 보험료 00,000천원은 정산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 도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사업비 정산 미이행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청도군에서는 「농어촌정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 등과 보조사업 대행 위·수탁협약을 맺어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수행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1조,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고,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도군과 ○○○○○○○○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도 ‘○○○○○○○○○에서는 매년 연도말정산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도군 ○○○○○과에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대행사업기관인 ○○○○○○○○로부터 매년 연도말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고 있다.

2.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면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경우 조달청장에서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낙석방지책을 관급자재로 구매하여야 함에도 사급자재로 반영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불필요한 제경비 반영 등 예정가격을 부적정하게 산출하여 [표] 낙석방지책 구매 방식 비교와 같이 사업비 00,000천원 정도를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며,

[표] 낙석방지책 구매 방식 비교

(단위 : 원)

품명	사급자재 반영시(A)				관급자재 반영시(B)				비교 (A-B)	비고
	규격	수량	단가	금액	규격	수량	단가	금액		
계					계					
낙석방지책	표준부		379,625		표준부		204,545			
낙석방지책	단부		742,545		단부		750,909			
제경비					조달 수수료	0.54%				

또한, 「건설표준품셈」 제6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편에 의하면 철근 가공은 절단, 절곡(벤딩) 등 철근의 변형을 요하는 작업이라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구조물 비가공 철근(8m) 174톤에 대한 가공품 적용 오류로 00,000천원 정도를 과다 계상

하고 있다.

그 결과 청도군 ○○○○과에서는 위수탁 사업에 대한 정산 미이행 및 총 공사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위수탁 대행기관으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 ②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CCCCCCCCCCCCCCCC CCC CCC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 도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도군 ○○○○과에서는 “CCCCCCCCCCCCCCCC CCC CCC 조성공사”를 아래 [표] 와 같이 2016. 11. 25. ‘△△△△건설(주) △△△’과 계약 하고 2017. 11. 29.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CCCCCCCCCCC CCC 조성공사	00	00	00	0,000	2016. 11.25	2016.11.30. ~ 2017.11.29.	△△△△건설(주) △△△	2017. 10.30. 공사중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 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도군 ○○○○과에서는 조립식 가설울타리가 설계에 반영된 185m보다 짧은 122m를 설치(감 63m)한 후, 기성검사계를 제출하였는데도 설계대로 시공 되었다고 2017. 5. 31. 기성검사하여 공사비 0,000천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었고,

L형 측구 시공 시 경계석 측벽 합판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아 공사비 0,000천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당해 현장에는 불필요한 지반조사 시험비 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있다.

그 결과 총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의 회수 및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천원(회수 0,000천원, 감액 0,000천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ㄱㄱㄱㄱ ㄱㄱㄱ(2구간)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 도 군
 관 계 부 서 ☆ ☆ 과
 내 용

청도군 ☆☆☆과에서는 “ㄱㄱㄱㄱ ㄱㄱㄱ(2구간) 개설사업”을 아래 [표] 와 같이 2015. 4. 23. ‘***건설(주) ***’과 계약하고, 2018. 8. 10.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ㄱㄱㄱㄱ ㄱㄱㄱ (2구간) 개설사업	00	00	00	0,000	2015. 4.23.	2015. 4.27. 2018. 8.10.	***건설(주) ***	진도 68%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순환골재 의무사용 관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의무) 및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3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발주자는 공사구간이 1km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되는 도로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따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용도에 따라 적용 기간별로 제품소요량의 30%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공사는 도로 2.467km를 개설하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 기층)을 30%이상 사용하여야 함에도 미적용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였다.

2. 부지임대료 관련

「설계실무 요령(경상북도)」에 따르면 공사추진을 위한 부지임대료는 제경비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본 공사에서는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36개월) 및 발파암 임시야적장 부지임대료(18개월)를 도급내역서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 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3. 미끄럼방지포장 그루빙¹⁾ 관련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그루빙, 슛 블라스팅, 노면 평삭 등의 방법으로 표면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며, 아스팔트 포장에 그루빙 등 표면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을 시공할 경우, 여름철에 반복 하중이 가해지면 아스팔트의 연성으로 인해 조면 조직이 파손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심한 평탄성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본 공사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에 적합한 그루빙을 아스팔트 구간에 잘못 적용(그루빙 3,562㎡)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게 하였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금액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

1) 그루빙(grooving)은 다이아몬드 날 또는 텅스텐 카바이드 드럼 등을 여러개 부착시킨 그루빙 기계로 포장층에 홈을 내어 우천시 수막 현상(hydroplaning)을 억제하거나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 저항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미끄럼 개량 공법

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VV VVVV(VVVV) 정비사업』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 도 군
관 계 부 서 도 시 과
내 용

청도군 ☆☆과에서는 “VVVVVV(VVVV)정비사업”을 아래 [표] 와 같이
2016. 9. 28. ‘\$ \$ 건설(주) \$ \$ \$’과 계약 하고 2016. 9. 28. 착공하여 2018. 9. 27.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VVVVVV(VVVV) 정비사업	00	00	00	0,000	2016. 9.28.	2016. 9.28. ~ 2018. 9.27.	\$ \$ 건설(주) \$ \$ \$	진도 20%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관보호공 레미콘 타설 관련

그런데도 청도군 ☆☆☆과에서는 차집관로 보호공 레미콘 타설시 고가의 인력 타설품이 설계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내 콘크리트 펌프차량 등 기계 장비가 진입 가능하고 실제로도 장비를 이용하여 레미콘 타설을 하고 있음에도 설계 변경하지 않고 레미콘 타설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고 있다.

2. 하수관로 품질시험 등

환경부(하수67712-549호, 2003. 5.22.)에 따르면 하수관거의 신설 또는 개량 공사 시 CCTV검사 및 수밀검사 등을 분리발주 하지 않고 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에 따라 품질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전국 지자체에 분리발주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통보하였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0조에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수밀시험 및 하수관내 CCTV조사를 분리발주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공사내역에 포함하여 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하고 있으며,

관로부설후 발생하는 사토를 되메우기용 또는 현장 인근에서 유용하고 있어 실제 사토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사토운반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 및 기존관로 부분 보수시에는 불필요한 환기구 설치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청도군 ☆☆☆과에서는 총 공사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 도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도군 ○○○과에서는 “○○○○ ○○○○○○ 건립공사”를 아래 [표] 와 같이 2017. 5. 31. ‘∞∞∞∞건설(주) ∞∞∞’과 계약 하고 2017. 12. 15.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 건립공사	00	00	지상2, 연면적 623㎡	000	2017. 5.31	2017. 6. 5. 2017.12. 15.	∞∞∞∞ 건설(주) ∞∞∞	진도 84%

1. 설계변경 없이 우선 시공 방치 관련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에는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실정보고, 설계변경 방침결정 등의 보고 및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단순한 경우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도군 공사 부설예방조례」 제9조에 따르면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도군 ○○○과에서는 공사착공 후 2017. 7. 17. 공정회의 시 부지조성계획고를 설계도와 달리 현 진입구와 동일하게 시공하는 것이 타당함을 인지하는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시공자로부터 실정보고, 설계변경 방침결정 등의 보고 및 승인 요청이 없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총 공사비 00,000천원을 우선 시공하는 등 공사현장을 방치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고 있다.

2.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0.05%)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태풍·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

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청구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도군 ○○○과에서는 준공완료일 12일 전인 2017. 11. 14.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등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골조 마감공사 시 우천사태 발생 및 추석명절기간 증가로 인한 마감공사 지연을 사유로 15일간의 계약기간을 부적정하게 연장하였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 부당한 사유를 들어 15일간의 계약기간을 연장함으로써 0.05% 건설(주) 대표 0.05%에게 관계규정에서 정한 지연배상금 0,000천원(000,000천원 × 12일 × 0.05%)을 납부하지 않도록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